

#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8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3. 10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의 연속성 유지 및 시민참여 제도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조례에 제4조제1항이 존재하지 않으나, 제5조제2항에서 “제4조제1항”을 인용하고 있어“제4조”로 변경(안 제5조제2항)
- 나. 2026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그 기한을 4년 연장(안 제7조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: 【붙임 4】

- 바. 입법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5. 12. 3. ~ 2025. 12. 23.(20일간)

### 사. 기타 참고사항

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4조제1항”을 “제4조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2026년 6월 30일”을 “2030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시민협력관
입 안 자	시민협력관	이 경 영
	시민동행팀장	이 선 우
	담당자 (연락처)	김 현 지 (481-3402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<u>제4조제1항</u>에 따라 제시된 시민의 의견을 시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제4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26년 6월 30일</u>로 한다.</p>	<p>제7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2030년 6월 30일</u>-----.</p>